



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어선·어구·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청에 제출합니다. 

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의 **일부만 폐업**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받을 수 없습니다.
어구·어선·시설 등의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(부분폐업),
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 

 신청내용과 시·군·구의 확인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, **이의신청**은 어떻게 하나요?

확인 결과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
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
시·군·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

문의 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 ☎1644-4116



신청기간 2018. 7. 5. ~ 8. 31.
신청장소 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
문의 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(1644-4116)



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

지급 대상자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
- 어업인등*에 해당하는 자 * 어업인등 : 어업인(어업경영자), 어업법인(영여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)
-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* 이전부터 생산한 자
 - *고등어 : '12.3.15(한·미국 FTA) 명태 : '15.1.1(한·캐나다 FTA)
 - *민대구 : '15.12.20(한·중국 FTA) 상어 : '15.12.20(한·뉴질랜드 FTA)
 - *새조개 : '15.12.20(한·중국 FTA) 아귀 : '15.12.20(한·중국 FTA)
 - *주꾸미 : '07.6.1(한·ASEAN FTA)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·채취·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(일부 위탁도 포함)
- 2017년에 지급 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·판매한 자
- 2017년 수산관계법(수산업법 등)에 의한 어업정지·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
지급 신청방법

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세요.

-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(시·군·구청에 비치되어 있음)
- 증명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-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생산사실 확인서, '17년도 판매 기록 등)
 -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(수협이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

FTA 폐업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

지급 대상자
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- 어업인등*에 해당하는 자 * 어업인등 : 어업인(어업경영자), 어업법인(영여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)
- 2017년에 지급 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·판매한 자
-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* 이전부터 생산한 자
 - *고등어 : '12.3.15(한·미국 FTA) 명태 : '15.1.1(한·캐나다 FTA)
 - *민대구 : '15.12.20(한·중국 FTA) 상어 : '15.12.20(한·뉴질랜드 FTA)
 - *새조개 : '15.12.20(한·중국 FTA) 아귀 : '15.12.20(한·중국 FTA)
 - *주꾸미 : '07.6.1(한·ASEAN FTA)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·채취·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(일부 위탁도 포함)
-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% 이상을 차지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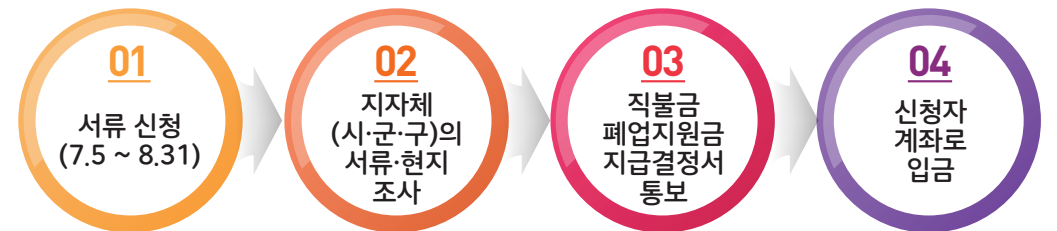
지급 신청방법

생산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세요.

-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(시·군·구청에 비치되어 있음)
-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(시·군·구청에 비치되어 있음)
- 증명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- 철거·폐기하려는 어선·어구·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(수협이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



FTA 피해보전직불금 ·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



※ 폐업지원금의 경우 서류·현지조사 이후 감정평가 실시